##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39 발의연월일: 2021. 8. 5.

발 의 자: 金炳旭・구자근・김석기

류성걸 · 서병수 · 이명수

이종배 • 이채익 • 정희용

주호영 • 태영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함정을 시운전하는 도중 시험 발사한 포탄이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격훈련과 관련한 일정이 선박소유주나 선장 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함으 로써,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 조 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선박 출항통제)"를 "(선박의 출항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를 "절차와 제2항에 따 른 사격훈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선박 출항통제) ① (생	제38조(선박의 출항통제 등) ①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
	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
	유자나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u>③</u>
기준·방법 및 <u>절차</u> 등에 필요	<u>절</u> 차와 제2항에 따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른 사격훈련 정보의 제공 방법
정한다.	<u>및 절차</u>